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的인 消防力 向上方案

張 信 會*
崔 珍 鐘**
李 泗 宰***
丁 國 台****

第1章 序論

第1節 研究의 展開順序

本研究는 全6章으로 構成하였으며, 그 體制는 다음과 같다.

- (1) 第1章 序論에서는 2000年代 消防行政發展 方案을 위한 問題를 提起하고
- (2) 第2章에서는 우리나라 消防의 變遷과정을 概觀해 보았으며
- (3) 第3章에서는 현행 消防行政組織의 (1) 組織
(2) 消防力 (3) 消防奉仕行政의 現況을 통하여 現 實態를 分析하였다.
- (4) 나아가, 第4章에서 이에 對한 問題點을 提起함으로써
- (5) 第5章에서는 2000年代 消防行政의 發展方案 을 導出하였으며,
- (6)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 이제까지 기술한 내용을 要約하여 結論을 맺었다.

第2節 研究의 方向

1. 2000年代 消防行政 狀況 假定

國民所得 1人當 300\$ 時代를 맞이하여, 우리의 살림살이 與件도 크게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生活環境이 급격히 多樣化되고 있고, 이에 따르는 火災危險의 增加趨勢는 곧 이에 副應할 만한 消防力を 要求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0年代의 消防은 바로 先進科學 消防行政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00年代의 消防與件은 建築物이 高層化되고 大型, 密集化될 뿐만 아니라, 油類, 電氣, 가스 등 危險物의 大量使用으로 火災樣狀이 多樣化되고 大型火災가 增大되어 自律消防體制의 定着이 크게 要請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消防與件의 變化에 効率의 으로 對處하기 위해서는 消防法令中에서 現實의 으로 不合理한 規定을 整備하고 効率的인 豫防對策과 科學學의 인 鎮壓對策 및 그에 상응하는 消防力 向上에 관한 研究分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消防은 긴 目으로 2000年代에 對備한 長期의인 消防發展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현행 消防行政 組織의 不合理點을 發掘하여 점진적으로 시정하여 時代狀況에 부응한 組織과 機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全南麗水消防署 署長
** 全南麗水消防署 消防課長
*** 全南麗水消防署 蓮燈派出所長
**** 全南麗水消防署 消防士

2. 研究의 目的

本研究에서는 2000年代에 科學 消防行政이 指向하여야 할 消防行政 發展 方案으로 (1) 消防行政組織 構造上의 不合理點을 導出, 改善方案을 提示하고자 하였으며 (2) 郡單位 以下 地域의 消防機關 常備化 (3) 2000年代 科學 消防行政 遂行을 為한 MIS(Magement Information System) 즉, 綜合防災情報 시스템의 採擇活用과 (4) 消防公務員 名譽心 鼓吹를 為한 報勵制度 制定 (5) 消防行政 需要擴大에 따른 消防行政機能의 改善으로 地方自治化 時代의 住民의 福祉欲求에 副應하기 위한 消防力 補強과 科學消防態勢의 確立 方案을 提示하는데 本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第2章 우리나라의 消防行政史 概觀

1. 概 觀

1397年 최초로 守城禁火司(守城: 兵曹, 禁火: 漢城府에 속함)라는 王宮消防隊가 創設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消防官署라 할 수 있는 禁火都監으로 世宗 8年(1426年)에 되어 火災를 禁하고, 길과 다리를 修理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어, 世祖 6年(1460年) 官制의 개편이 이루어져 禁火都監은 廢止되고 定員을 減하여 漢城府에 속하는 기구로 되어 34年間 存續하다가 廢止되었다.

그후 1894年 警務廳에서 消防事務를 擔當함으로서 警察局에서 消防 事務를 始作하게 되었으며, 1915年 制定公布된 朝鮮總督府令 第65號에 따라 福祉安全에 대한 義勇奉仕精神의 진작을 목적으로 각 地方青年을 중심으로 民間義勇消防隊를 組織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消防의 母體가 되었다.

1925年 現 鐘路消防署의 전신인 京城消防署가 신설되었으며, 2次 大戰中에는 消防의 國防上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住民保護의 尖兵으로서 消防은 防共, 기타 警防 等 警察의 補助機關으로서 多面的인 業務를 遂行하여 왔으며, 國民警防의 核心體로 運營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美軍政廳에 의하여 1946年 4月 10日字로 軍政法令 第66號로 中央과 道에 消防廳 및 消防委員會를 設置하고 警察로부터 消防이

完全 獨立하여 自治消防體制를 確立하기에 이르렀다.

1948年 政府樹立 以後 美軍政廳 時代의 自治消防機構는 警察로 다시 引受되어 警察業務의 一部가 되었다가, 그 후 1970年 8月 30日 政府組織改正과 함께 消防을 地方自治業務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서울特別市와 釜山直轄市를 除外한 地方自治團體는 財政事情을 考慮하여 移轉시기가 유보되어 1972年 6月 1日 서울과 釜山에 消防本部가 新設되고, 1975年 7月 23日 民防衛本部 消防局이 新設됨으로서 消防은 다시 民防衛業務의 일분야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反 省

따라서 1950年代 以前의 消防業務는 法의 인根據 없이 火災의 鎮壓에만 그치는 小極의인 行政에서 1958年 消防法 制定과 함께 積極의인 福利消防行政으로 그 職務範圍가 擴大되었다가 1963年末부터는 消防業務의 範圍에서 風水害와 雪害部分은 削除되어 火災의豫防 警戒 및 鎮壓活動에만 專念하여 왔으나 그후 奉仕機能의 강화요청에 따라 消防救急業務를 消防業務의 範圍에 包含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以上의 대략적인 消防史의 概觀에서와 같이 길지않은 消防行政의 歷史 속에 때로는 그 組織 및 業務의 잣은 改廢로 劇期의인 發展의 계기를喪失하고, 단순히 火災豫防 鎮壓 機能으로 그命脈을 維持해 온 것이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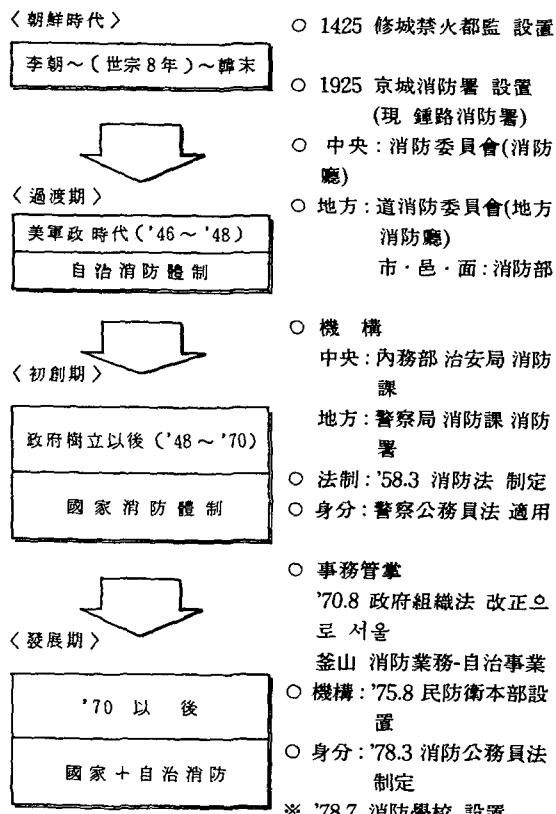
따라서 安定과 繁榮의 基盤에 올려진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비추어 이제 消防業務도 積極의인 危難對備 行政組織으로 育成 發展시켜 經濟發展에 따른 消防需要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第3章 現行 消防行政 組織의 實態

第1節 行政組織의 構成

消防組織 및 機構의 빈번한 变천은 第2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一貫性이 있는 消防行政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消防行政 發展에 沮害 要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的인 消防力 向上方案



〈別表2-1〉 消防沿革

1958	소방법 제정(법률 485호)
1961	천안국 소방과 승격
1970	소방행정 지방자치 고유사무(지방조직법 개정, 법률 2249호), 지방자치 소방사무시작, 국가, 지방, 신분이원화
1972	서울, 부산 소방본부 설치
1973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법률 제2502호
1975	시·군 소방서직제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1977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설치 소방공무원법 제정(법률 제3042호)
1978	독자적 신분법 확립 소방학교설치(대통령령 제9106호)
1981	대구, 인천 소방본부 설치
1982	서울시 소방항공대 설치
1983	서울시 소방교육대 설치, 소방구급법 제정(법률 제3675호, 소방법 제70조10)
1985	광주 소방본부 설치
1988.1	전국 6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119구조대 설치

우리나라 消防行政 組織은 1975年 8月 26日 大統領令 第7769號로 内務部의 직제를 改定하여 内務部 民防衛本部에 消防局을 設置하여 消防政策決定機關의 位置에서 全國 消防機關을 管掌하고 있다.

1981年 12月 31日 改定된 政府組織法 第2條 6項(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民防衛業務中 消防業務를 管掌하는 局長, 課長 및 擔當官을 消防公務員으로 補하게 되어 있으나, 主務局長인 内務部 消防局長을 비롯하여 内務部와 各道에 一般職과 消防職公務員의 복수職으로 規定되어 있다. 또 서울과 直轄市는 自治團體 所屬機關으로서 消防署가 設置되어 있고, 그外 地域은 1988年 4月 6日 新로운 地方自治法의 施行으로 地方自治團體 直屬機關으로 편입되어 地方自治團體 地域의 消防事務를 處理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直轄市 地域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根據하여, 그外 地域은 大統領令에 의하여 消防機關이 設置되는 二分化된 構造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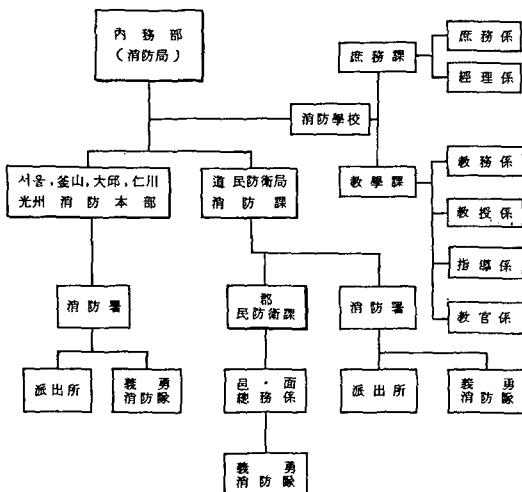
現在 全國의 消防行政 組織機構는 別表 3-1, 3-2, 3-3, 3-4, 3-5, 3-6과 같다.

〈別表2-2〉 消防沿革表

년도	내역	비고
1397	수성금화사 운영	
1426.2.26	금화도감 설치(영조)	최초소방기관
1460	금화도감 폐지	
1675.10	금화사 설치(임진왜란중 없어짐)	
1894	경무청에서 소방사무담당	경찰국에서 소방사무시작
1910	경무총감부 보안과 소방계 설치	
1919	경무국 보안과(소방사무 분장)	
1925	경성보방서 신설(현재 종로소방서)	최초소방서
1939	경무국 방호과(소방사무분장)	
1943	경무국 경비과(소방사무분장)	
1945	경무국 소방부 신설(도경찰국 소방과)	
1946	중앙 및 도에 소방위원회 창설	미 정
1947	중앙 및 도에 소방청 설치	최초소방청
1948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로 축소	
1950	내무부 치안국 및 각 시도 경찰국 보안과(서울, 경남은 소방과)	소방계로 축소
1955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방호계로 축소	

張信會·崔珍鍾·李泗宰·丁國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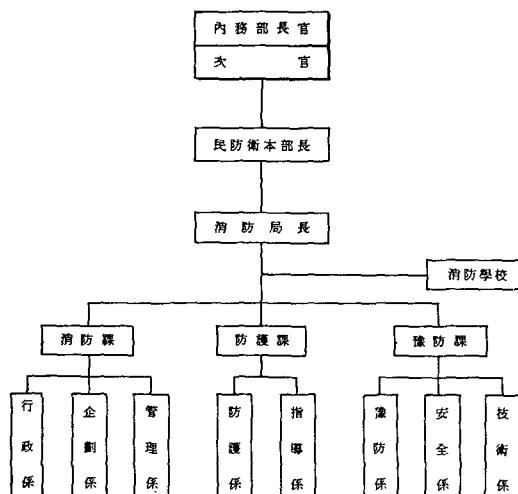
- 消防本部：5本部
 - 消防署：83署
 - 派出所：332所
 - 人員：9,805名（國家：1,142名，地方：8,663名）



(資料：'88 消防行政資料 及 統計，內務部)

〈別表3-1〉 全國의 消防行政 組織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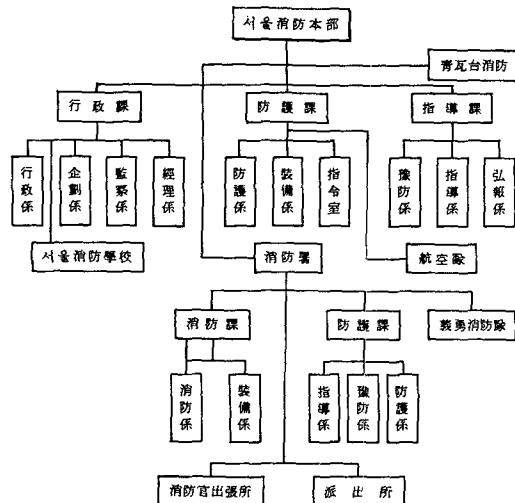
- 3課 8擔當
 - 人員：36名(消防職 20名，一般職 12名，雇傭職 4名)
一般職 12名(局長 1人，課長 1人，擔當 4人，
係員 6人)



(資料：'88 消防行政資料 署 統計，內務部)

〈別表3-2〉 内務部의 消防行政 組織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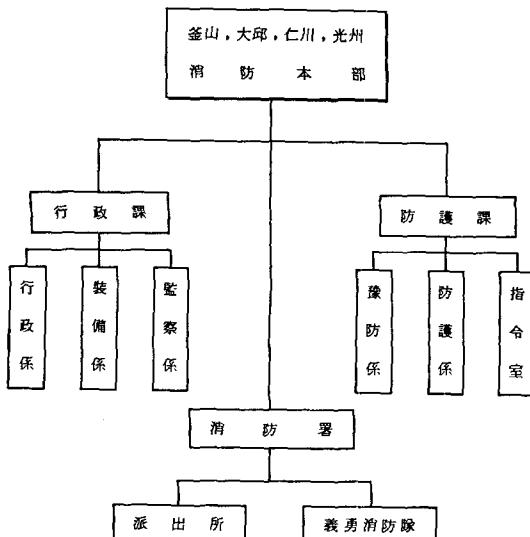
- 서울特別市 行政에 關한 特別措置法, 서울特別市 行政機構에 關한 規程, 서울特別市 事務分掌에 關한 規則의 定하는 바에 따라 1本部, 3課 9係, 1室, 1學校 傘下에 13個 消防署와 71個 派出所, 1個派出所, 2個隊(青瓦台消防, 航空隊) 人員 2,885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資料：'88 消防行政資料 告 統計，內務部)

〈別表3-3〉 서울特別市 消防行政組織 機構

- 3課 5係 1室至 構成
 - 人員: 釜山 840名, 大邱 528名, 仁川 379名,
光州 261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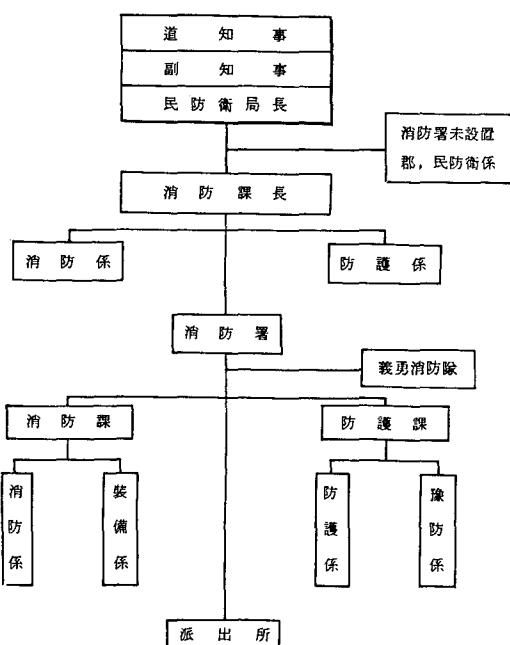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略 統計)

〈別表3-4〉 直轄市 消防行政 組織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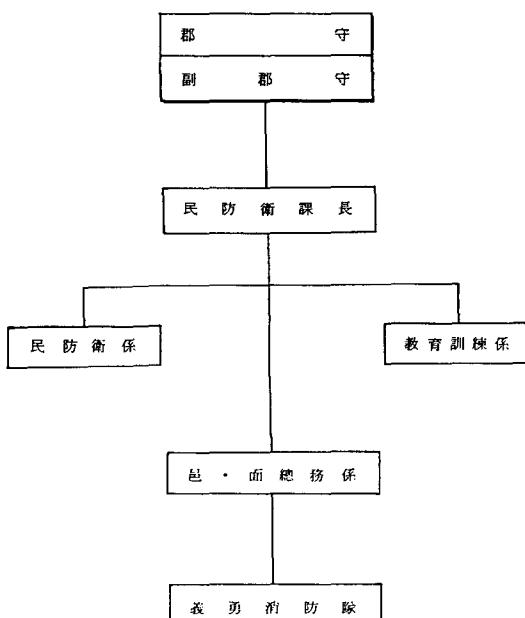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哭 現實的인 消防力 向上方案

- 民防衛局內에 民防衛課와 消防課를 두어 消防課 2係에서 消防業務을 專擔



(資料：'88 消防行政資料 略統計，內務部)

〈別表3-5〉 各道의 消防行政 組織 機構



(資料：'88 消防行政資料 略統計，內務部)

〈別表3-6〉 郡地域 消防行政 組織 機構

第2節 消防力

消防力 補強 問題를 살펴볼 때 大然閣호텔의
대參事が 消防裝備의 科學化를 促進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内務部에서는 1972年度부터
4次에 걸쳐 5個年 補強計劃을 設立하여 消消防力의
現代化를 促進시키고 있으나 現在 消消防力은 消消防
力基準(別表3-7)과 比較하여 볼 때 保有率은
消防署 87%, 派出所 81%, 消防裝備 70%, 消防用
水施設 81%, 消防人力은 소요인원 22,048名이나
保有人員은 9,805名으로 保有率은 45% 水準에
不適한 實情이다.

第3節 消防奉仕行政

1. 1981年 國民에 대한 奉仕活動의 일환으로
釜山 消防本部에서 夜間 救急患者 移送業務를
示範實施한 바 利用頻度가 날로 增加하여 '82年度
에는 “夜間 救急患者 申告센타” 運營規定을 마련
하여 9個市 23個 消防署에 救急隊를 編成하였고,

〈別表3-7〉 消防力 基準(消防力 基準對 保有)

區 分	消防署	派出所	消 防 裝 備 (소방차, 소 방정소방헬기)	消 防 人 力	消 防 用 水 施 設
所 要	96署	410所	3,515台	22,048名	39,196 個所
保 有	83署 (87%)	332所 (81%)	2,468台 (70%)	9,805名 (45%)	31,903 個所 (81%)
不 足	13署	78所	1,047台	12,234名	7,293箇所

(資料：'88 消防行政 資料 署 統計，內務部)

〈別表3-8〉消防力 捕強實績 場 算計

消防力強調実績実計量					
年度別 区分	基準年度 (71年末)	第1次 (72~76)	第2次 (77~81)	第3次 (82~85)	第4次計画 (86~90)
消防署	34署	9署	11署	21署	12署
派出所	83所	39所	63所	95所	40所
消防官	974名	1,583名	3,773名	2,123名	1,647名
装備	1,092台	164台	355台	462台	914台
消防用水	8,073箇所 (75年末)	2,524箇所 (76年末)	5,489箇所	8,824箇所	11,837 箇所

(資料：'88 消防行政 資料 里 統計，內務部)

張信會·崔珍鍾·李泗宰·丁國台

〈別表3-9〉 全國 消防署 및 定員
88年 1月 1日 現在

區分 市道	官署		定員			備考
	消防署	派出所	計	國家	地方	
計	83	332	9,805	1,142	8,663	
消防署			20	20		
消防學校			27	27		
서울	13	71	2,885		2,885	
釜山	6	34	840	3	837	
大邱	3	23	528	66	462	
仁川	3	14	379	42	337	
光州	2	9	261	41	220	
京畿	11	45	1,049	177	872	
江原	7	18	472	107	365	
忠北	3	9	265	57	208	
忠南	5	19	520	91	429	
全北	5	15	453	96	357	
全南	10	23	699	158	541	
慶北	5	14	390	80	310	
慶南	8	33	853	144	709	
濟州	2	5	164	33	131	

(資料: '88 鎮壓消防力 現況, 內務部)

83年 12月 31日 法律 第3675號(消防法 第70條10)로 救急業務의 基盤을 構築하여 現在 消防官署에 波及 實施하고 있으나 救急患者를 病院에 移送하는데 그치고 있는 實情이다.

2. 또한 國民便宜는 100가지 施策推進事項의 한 방법으로 '85年度부터 “消防施設 故障申告센타”를 設置 運營하여, 特殊場所에 設置된 消防施設에서 흔히 發生하고 있는 輕微한 고장은 消防官署에서 資料에 迅速히 補修活動을 展開하여, 施設主의便宜를 圖謀하고 自衛消防能力을 제고함으로써 信賴받는 消防行政을 具現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第4章 2000年代 消防行政을 爲한 問題의 提起

第1節 現行 消防行政 構造上의 問題點

1. 地方自治制下의 消防業務에 對한 責任

별표4-2의 消防法 沿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선 消防業務遂行 責任부터 살펴보면 消防法第3條에 의한 消防業務에 對한 責任이란 消防官署長은 誠實히 消防業務를 推進해야 하며, 그義務主體가 消防業務遂行義務를 위반하였을 때 法律上 제재를 받거나 不利益한 結果를 받는 地位라 할 수 있다.

이를 狹義의 概念으로 말한다면 消防業務와

〈別表3-10〉 年度別 救急患者 移送實績

年度 區分	'81	'82	'83	'84	'85	'86	'87	增加率(%)	
								年平均	'86
移送件數 (件)	2,170	6,858	11,756	16,211	24,291	29,813	36,863	70.3	23.6
移送患者數 (名)	2,241	7,373	12,600	17,475	25,880	31,632	39,027	71.9	23.4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別表3-11〉 麗水消防署 消防施設 故障修理 實績('87年度)

消防對象物	計	検査時 現場 修理			申告接受 出張修理	
		491	352		139	
施設	部品	計	茲 시 등		卉 - 즈	
		490	429		61	
(件)	輕微한 故障修理	計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쿨러 하 - 룬 포소화설비			
		19 17				
		388	자 탑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 타 비 고			
		87	62 131 66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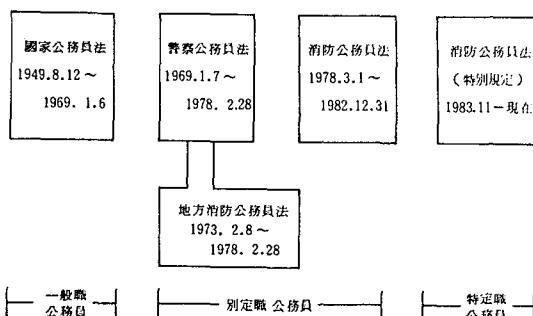
(資料: 麗水消防署 '88 消防業務 統計)

關聯한 “公務員法上 責任 즉 行政上 責任”이라고 할 수 있지만 廣義로는 刑事 및 民事上의 責任까지 包含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型火災 發生時 地方自治團體長을 問責하는 事例가 거의 없고 消防署長이 火災豫防 및 鎮壓業務에 전적인 責任을 가지고 있는 實情으로 消防法 第3條에 의한 市長·郡守의 監督權行事가 現在까지는 不必要한 것으로서 여겨 왔다. 또, 地方自治法에 根據하여 消防機構이 地方自治團體의 直屬機關化됨으로 地方自治團體長의 消防에 對한 認識가 財源不足으로 잘못하면, 消防行政機關과 그機能이 더욱 弱화될 우려가 크다.

2. 消防公務員 身分體系

1969年 一般職 公務員에서 分離되어 警察公務員 消防職으로 되었다가 1973年 2月 18日 法律 第2502號로 地方消防公務員法을 制定하고 有給 常備隊員을 地方消防公務員으로 任用함으로써 警察公務員法에 依한 消防公務員과 身分體系가 二元化되었으며, 나아가 1977年 消防公務員法이 制定되어

施行됨으로서 하나의 獨自의 身分法을 가지고 있으나 全國消防公務員의 身分은 國家職과 地方職으로 區分되며 約 90% 以上이 地方消防公務員으로서 運營豫算의 財源도 國費와 地方費로 區分되어 人事制度上 및 昇進·任用의 不合理點을 露出하고 있으며, 効率의인 人事運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實情이다.



(資料: '8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内務部)

〈別表4-1〉 消防公務員 身分法 變遷

〈別表4-2〉 消防法 沿革

區 分	公 布 日 字	改 正 要 旨
制 定	'58. 3. 11 (法律 第485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火災·風·水·雪害豫防警戒, 鎮壓規定 ○ 消防施設義務化 ○ 建築許可時 消防署長 意見聽取 ○ 義勇消防隊 設置
1次 改正	'63. 5. 3 (法律 第135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官의殉職·公傷의補償에 關한 規定削除 ○ 危險物取得主任 免許試驗等의 手數料 規定 新設
2次 改正	'67. 4. 14 (法律 第1955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風水·雪害業務削除 ○ 危險物 關係規定 補完
3次 改正	'70. 12. 31 (法律 第2249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長·郡守의 消防業務에 關한 指揮·監督規定 新設(서울, 釜山外는 留保) ○ 消防署 未設置 市·郡의 消防業務는 管轄警察署長이 遂行
4次 改正	'73. 2. 8 (法律 第2503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法 全文 改正(消防施設促進)
5次 改正	'75. 12. 31 (法律 第2802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本部長 및 消防署長은 市長·郡守의 指揮 監督을 받도록 하고 消防署 未設置地域은 市長·郡守가 消防業務를遂行토록 함(從前: 警察署長) ○ 火災豫防에 關한 市·郡條例에 罰則을 規定 ○ 消防用 機械·器具等을 製造 및 販賣하고자 하는자는 手數料를 納付토록 함. ○ 市·郡의 消防力 基準을 大統領令에서 内務部令으로 調整
6次 改正	'76. 12. 31 (法律 第2947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用 機械·器具 販賣等을 許可제에서 申告制로 緩和(市·道知事) ○ 消防用 機械·器具等의 檢定을 内務部長官이 指定하는 者가 代行할 수 있도록 함.
7次 改正	'80. 1. 4 (法律 第3229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住宅난방용 危險物貯藏所는 危險物 製造所等의 設置許可 對象에서 除外 ○ 「消防安全協會」設置 根據 規定 新設 ○ 消防施設 및 危險物設置基準 防火管理者 選任對象 等 緩和 ○ 消防検査回數 緩和 (年 2~6回 → 年 2回로 一元化)

區 分	公 布 日 字	改 正 要 旨
8次 改正	'80. 4. 4 (法律 第3413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火災保險協會의 消防検査 特例規定 削除 ○ 消防検査 年 2回 → 年 1回로 緩和 ○ 建築許可等의 同意를 消防施設 等 完工 檢査畢證 交付로 갈음 ○ 高層建物高さ 調整(從前 15m以上 → 31m 以上) ○ 危險物 臨時 貯藏·取扱承認期間 延長 緩和(10日 → 60日) ○ 既存 消防對象物의 施設基準 不遡及 ○ 注油取扱所에서 一般需要者에게도 販賣할 수 있도록 함.
9次 改正	'83. 12. 30 (法律 第3675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消防用 機械·器具 販賣 等 自由化 ○ 消防設備 等을 登錄制에서 免許制로 轉換 ○ 防炎物品의 性能検査 委託規定 新設 (消防署長 → 韓國消防検定公社) ○ 請願消防員制 新設 ○ 消防救急制度 新設 ○ ホテル等 大型宿泊施設의 自動消火設備 및 避難器具 補強

3. 消防公務員 報勳制度(殉職, 公傷)의 法制化 未備

消防法 第1條(目的)에는 消防公務員 본연의義務에 具體的인 明示가 되어 있으나, 義務修行中發生하는 死傷者에 對한 報勳에 대해서는 法制화되어있지 않는 實情이다. 警察의 境遇 警察公務員法 第16條(報勳)에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其他職務遂行 또는 教育訓練中 死亡한 者(公務上 疾病包含) 및 상이(公務上 疾病包含)로 退職한자로서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 禮遇等에 關한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禮遇를 받는다고 法律로 明文化되어 있으나, 消防公務員은 消防法 制定當時('58.3.11 法律 第485號)에 消防公務員의 報勳에 關한 規定이 되어 있었으나, 1次 改正當時('63.5.3 法律 第1955號) 削除되어 '88年 現在 9800여명에 이르는 消防公務員들은 職務의 危險度에 比하여 社會의 無關心과 열악한 勤勞條件 및 危險한 勤務狀況으로 해마다 死傷者數가 急增하는 實情이다.

消防公務員 報勳에 關한 削除된 1963年 5月 3日 以後 消防公務員의 殉職, 公傷者 現況(別表4-3)을 살펴보면 殉職53名, 公傷380名, 計 433名으로 全 消防公務員 9,800餘命의 2%에 該當하는 수자이다.

4. 消防力의 不足

現在 都市規模에 比하여 消防力의 不足함은 第3章(別表3-7 消防力 基準)에서 살펴본 바와

〈別表4-3〉 消防公務員 殉職·公傷者 現況

區 分	計	63~ 70年	71~ 75年	76~ 80年	81~ 85年	86~ 88現在
計	433	31	69	109	164	60
殉職	53	11	10	14	11	7
公傷	380	20	59	95	153	53

(資料: 自治消防 '87.4月號)

같다. 이에 앞으로 2000年代 科學消防에 맞는 實情의 消防力의 補強策이 當面 課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消防施設이 되어있지 않으면 強制手段으로 處罰까지 하여 是正하고 있으나 消防力이 不足한 與件에서 消防業務를 執行하여 大型火災가 發生하면 역부족의 責任을 물어 該當署長 및 關係者の 職位解除等 責任을 묻는 逆說의 境遇가 없지 않았다.

예컨대 鹿水消防署의 境遇 火災出動部隊 現況은 別表4-4와 같은 實情으로 機關員 1名이 車輛 2台를 擔當하고 있는 境遇도 있으며 警防要員 역시 人員不足으로 因하여 2次出動部隊 車輛에는 編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次出動部隊 補強을 위하여 2次出動部隊 機關員이 先發隊 警防要員으로 出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實情이며, 1次出動部隊 車輛도 火災出動時 車輛 1台當 1~3名의 鎮壓要員 밖에 되지 못하는 實情으로 先着隊의 重要任務인 人命救助와 火災의 初期鎮壓 時期를 놓쳐버릴 우려가 없지 않다.

〈別表4-4〉 麗水消防署 火災出動部隊 編成現況(本署 蓮燈派 出所)

- 本署 蓮燈派出所 勤務人員: 40名(甲·乙部 20名)
(勤務人員 20名: 警防: 9名, 關聯員: 11名)

(1次 出動部隊)

鎮壓部隊(車種)	指揮車	5號(呂三車)	6號(多目的車輛)	7號(化學車)	12號(小型呂三車)
人員	狀況室長·現場調查要員	警防: 3名	警防: 2名	警防: 2名	警防: 1名

(2次 出動部隊)

鎮壓部隊(車種)	救急車	9號(呂三車)	10號(大型 물탱크차)	11號(사다리차)	13號(呂三車)	15號(수조부)
人員	機關員: 있음 警防: 없음	機關員: 없음 警防: 없음	機關員: 없음 警防: 없음	機關員: 있음 警防: 없음	機關員: 있음 警防: 없음	機關員: 있음 警防: 없음

- 9,10號 車輛은 巡察車, 行政車 關聯員이 兼함
- 15號 車輛의 關聯員은 火災出動時 1次出動 警防要員 으로 出動
- 10,11號 車輛은 高層建物 火災時 1次出動
- 火災接報 받은 通信要員은 1次出動 警防要員에 編成

되어 있으나 現場出動은 뜻함(火災出動時 通信要員 2名勤務: 通信班長 1名·申告接報時 要員 1名)

- 열외인원: 市場固定勤務 1名, 通信班長 1名
- 2次 出動部隊 全車輛 警防要員 없음.

5. 消防專門人力 養成機關 및 研究機關의 不足

消防業務는 專門技術分野로서 어느 職務보다도 專門知識을 要하나 現 우리나라의 消防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87學年度부터 경원專門大學(大田市所在)와 중경工業專門大學(성남시소재)에 消防安全管理科가 開設되어 있을 뿐, 科學消防으로 向한 有能한 人才養成을 위한 側面에서 볼 때 크게 未洽한 實情이다.

또한, 專門家들로 構成된 消防研究機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最近에 設立된 韓國火災保險協會 傘下에 防災研究所가 있을 뿐이다.

第2節 消防奉仕行政의 問題點

1. 救急業務는 날로 增加趨勢에 있으며, 그에 따라 各樣各色의 患者를 接하게 된다. 그러나 救急業務는 救急係등의 專擔部署가 없으며 看護資格 所持者 등 專門知識을 가진 隊員의 確保가 되어있지 않고 일정教育 이수자를 指定 運營하는 實情으로 救急患者를 단지 病院에 후송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 또한 消防施設 故障申告센타의 運營도 消防施設에 關한 修理專門要員이 없어 輕微한 故障施設과 部品交換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므로 建物主의 實際 費用 負擔이 되는 故障은 專門業體에서 修理를 함으로써 消防施設 故障申告센타의 본연의 目的達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第5章 2000年代를 向한 長期 消防發展 方案

第1節 2000年代의 消防行政組織 構造改善

1. 消防組織의 擴大改編

政府組織法 第2條 6項(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民防衛業務中 消防業務를 擔當하는 局長·課長 및 擔當官은 消防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의 規定을 “消防公務員으로 補한다”라고 政府組織法를 改正하여 消防業務는 消防公務員이 擔當하게 하며, 消防法 第3條(消防業務에 對한 責任 等) 중 第1項의 宣言的 規程을 改正하여 地方自治團體長의 消防業務遂行에 對한 責任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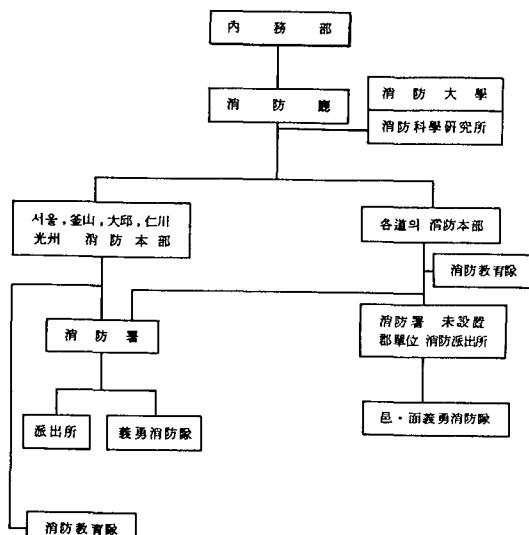
2000年代의 理想의in 消防行政組織 發展方向으

로는 別表5-1, 5-2, 5-3의 消防組織構成表와 같이 改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理想的인組織의 發展方向으로서 內務部傘下에 消防廳을 設置하고, 消防學校를 4年制 消防大學으로 昇格시켜 幹部職 公務員의 管理能力培養과 專門教育을 專擔케 하며, 附設로 消防科學研究所를 設置하고 각道의 消防課는 道消防本部로 格上, 改編하여 직제를 一元화하고, 道消防本部에 消防教育隊를 新設하여 下位職 消防公務員의 基本教育을 專擔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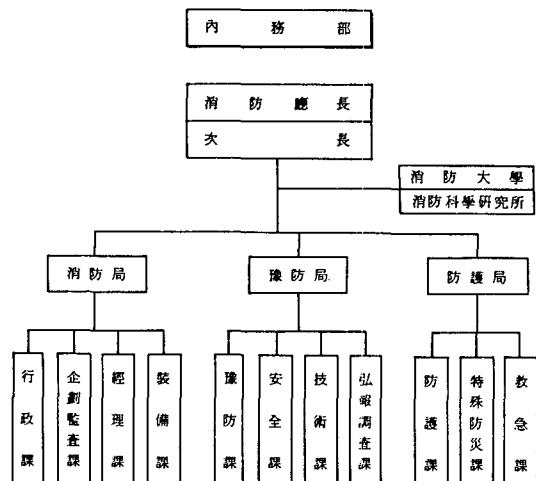
한편, 現行 9等級인 階級構造를 上向調整하여 11等級으로 하며, 消防廳長은 消防總監으로 補하고, 次長은 消防司監으로 補하며, 現行 消防局의 職制上 課長職級이 消防監이며, 警察의 同一階級인 警務官은 課長上位職인 治安本部의 部長補職이고, 課長은 總警이므로 警察機構와의 均衡을 維持하고 消防組織의 活性化와 專門化를 期하도록 現行 職級構造를 改正할 必要가 있다. 그 바람직스러운 改正 職級構造는 別表5-4와 같다.

2. 指揮體系 및 人事制度 改善

消防業務의 專門性, 技術性 等 特殊性에 발맞추어 指揮權과 責任을 單一化하여 內務部長官—消防廳長—道知事—消防署長으로 하여 豫算上의 問題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責任집으로서 일사분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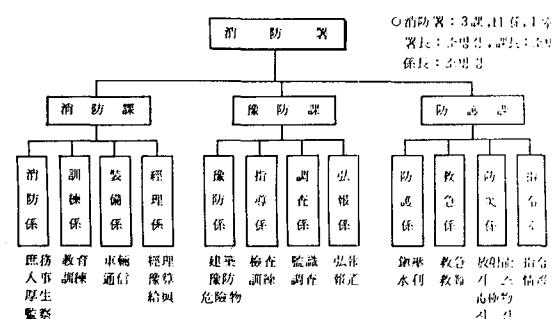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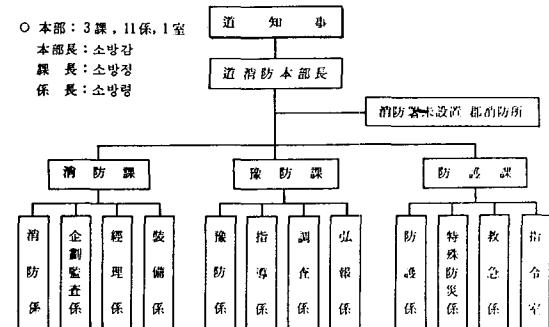


〈別表5-1〉 2000年代 全國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 機構: 1廳, 1次長, 1大學, 1研究所
3局, 11課, 39係
- 職級: 廳長: 소방총감 研究所長: 소방감
次長: 소방사감 課長: 소방정
消防大學長: 소방사감 係長: 소방령
局長: 소방장감

〈別表5-2〉 2000年代 中央消防行政組織 機構



〈別表5-3〉 2000年代 各道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의 消防力 向上方案

〈別表5-4〉 바람직스러운 2000年代 消防階級構造와 警察·一般職과의 比較

消 防 官		警 察 官		一 般 職
現 行	改 正	階 級	職 位	
消防總覽		消防廳長	治安總覽	治安本部長
소방사감		消防次長 消防大學長 서울本部長	치안정감	서울市警局長 警察大學長
소방정감	消防學校長 서울·釜山本部長	消防廳局長 釜山本部長	치안감	本部次長 京畿·釜山局長
소방감	本部課長 大邱, 仁川, 光州 本部長	研究所長 서울本部部長 서울消防學校長 直轄市·各道本部長	경무관	本部部長 道警局長
소방정	消防署長 本部係長	消防廳課長 消防署長 서울本部 및 直轄市, 各道本部課長	총경	警察署長 本部課長
소방령	消防署長 署課長	消防廳係長 서울本部 및 直轄市 各道本部係長 消防署課長	경정	警察署長 署課長
소방경	消防署課·係長	消防署 係長	경감	警察署課·係長
소방위	署係長·派出所長	派出所長	경위	署係長·派出所長
소방장	派出所長		경사	支署長
소방교			경장	
소방사			순경	서기보

指揮體制가 定立될 수 있으며, 國家와 地方消防公務員으로 身分이 二元化되어 있는 現行制度를 改善하여 道消防本부에서 道單位 地方消防公務員으로 身分을 一元화하여 道消防本부에서 管掌함으로서 効率的이고 일관성있는 人力需給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매년 道消防本부 主管아래 定期的으로 昇進任用 試驗을 實施하여 昇進 직체를 解消하고, 消防官으로 公珠되어 오면 오직 消防을 平生天職으로 알고 消防에 對한 研究와 自己發展, 自己成長 等 能力を 發揮할 수 있도록 政策의 인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3. 郡單位以下 地域의 消防機關 常備化

現在 中央執權化의 消防力 基準은 市街地 및 人口數, 密集 建物面積 等을 감안하여 審議 承認하여 왔다. 現行 經濟趨勢로 미루어 볼 때 2000年代에는 福祉行政次元에서 住民 한 사람 한 사람의 安全에 對한 欲求를 充足시키도록 全 國土,

全 地域에 消防機關의 常備化가 必要한 것이다.

日本의 境遇 消防의 常備化에 對하여는 “消防本部 및 消防署를 設置해야 하는 市町村을 定하는 정령”에 의하여 市는 모두 消防本部 및 消防署의 設置가 義務의 으로 되어있고, 町村에는 自治大臣이 當該 町村의 人口, 氣象, 條件 等을 考慮하여 指定한 것에 對하여는 同一한 義務가 發生토록 되어있다.

(政令: 合議體로서 内閣이 發하는 命令)

1986年 4月 1日 現在 常備化 市町村은 2,967 市町村中 정령 市町村은 2,958 市町村이며 임의로 常備化하고 있는 것은 5町村이 있다.

常備化率은 市町村數의 91.2%에 달하며, 全國 人口의 98.5%가 常設消防機關의 消防서비스를 받고 있어 全國的으로 볼 경우 주로 산간지방, 낙도인 町村의 일부를 除外하고는 消防署로 常備化되어져 온 實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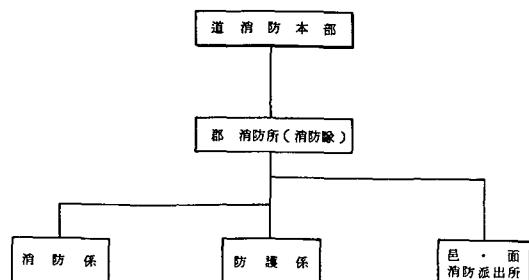
예컨대 韓國電力에서는 산골벽지에서 電氣需要

張信會·崔珍鍾·李泗宰·丁國台

國家가 發生해도 投資效果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確實하지만 國民福祉向上 次元에서 많은 豫算을
들여 電氣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消防機關의 常備化 一環으로서 消防署 未設置
郡地域에 消防官署의 設置가 더욱 必要해진다.

郡地域에 消防隊를 設置하고 面單位地域까지
消防派出所를 新設하여 國民들에게 消防의 惠澤을
고루 누리며 安定된 삶을 追求토록 하여야 하겠
다.

또한, 大型火災, 風水害, 石油基地의 災害 等
大規模인 災害는 當該 郡의 消防力만으로 방어할
수 없는 境遇가 많다. 따라서 當該郡이 單獨으로
處理하는 것보다도 隣接郡과의 相互應接 또는
共同組織 等에 의해 消防事務를 處理하는 方式인
“相互應援協定에 의한 組合을 設立”하는 方式
및 “消防特別區(Special District)를 設置하여 廣域
消防體制를 이룩하여 處理함이 보다 合理的이라
하였다.



※ 消防署보다는 작고 派出所보다는 큰 중간形態의
消防機構

(郡 消防所)

(邑·面 消防派出所)

- 職制：派出所長은 지방소방위 혹은 지방소방장으로 補職
 - 定員：邑單位: 13名以上(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2명, 소방사 8명)
面單位: 車輛台數에 比例 車輛 1台當 機關員 2
명 警防要員은 義勇消防隊員으로 充當

〈別表5-6〉 2000年代 郡地域의 消防行政組織 機構

4. 消防所要財源 確保

(1) 消防共同施設税賦課方法의改善

火災危險의 負擔은 그 對象物이 갖는 物量의 인要因(規模, 建築材料, 施設等) 뿐만 아니라 失火, 防火等의 人的要因(內容人員, 出入人員)과 建築物의 密立이나 通路가 狹小하여 消防車의 接近이 困難하여 연소우려가 있는 環境的 要因도 있다.

이와 같은 要因들은 相互關係를 갖고 있으며
危險負擔이 클 때 公設消防力의 對應規模도 같은
크기로 構成되어야 地域社會의 消防安全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그러므로 火災危險 對象物을 地方稅法 施行令 第199條의 2에 따라 火災危險 建築物로 分類하여 劃一의으로 適用할 것이 아니라 受惠者 負擔의 原則에 따라 消防法 施行令 別表1에 의한 消防對象物을 火災危險度에 따라 細分하여 賦課適用함으로써 稅收를 擴大해야 한다. 또한 地方稅法에서 獨立한 消防制定法을 制定하여 消防稅 徵收에 圓滑을 기하고 消防機關에서豫算編成權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消防共同施設 負擔金의 賦課徵收 檢討

消防法 第29條 1項에는 “特殊場所의 關係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消火設備, 避難設備, 消防水 設備 其他 消火活動上 必要한 設備를 内務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고 維持하여야 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이의한 設備를 法으로 定하여 設置 維持하도록 한것은 火災로 因한 被害를 該當 對象物內에 局限시켜 最小化하여 地域社會의 消防 安全의 負擔을 나누어 갖는테 目的이 있다.

그러므로 所有한 財產과 人命被害 防止를 爲해서 住民들은 防火施設의 設置나 管理를 積極的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그 義務를 疏忽히 하여 對象物이 火災危險에 露出되어 消防共同施設의 增大需要를 加重시키는 關係者에게 法定施設을 完備時까지 未備한 施設에 比例하여 消防共同施設 負擔金을 一定하게 賦課徵收하여 稅外收入源을 確保함으로써 不足한 消防財源의 擴充을 期할 수 있다.

(3) 危險物 車輛, 船舶등에 對한 消防稅 賦課

'87 火災發生統計를 살펴보면 車輛火災는 전체
火災發生件數중 3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危險物,
가스등에 의한 火災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막대한 消防力を 소모하는 危險物, 가스, 車輛, 船舶 등에도 消防稅를 부과하는 것이 地方 稅法 精神에 비추어 타당하다.

5. 消防公務員 報勳法 制定

現在 우리 消防組織構成員에 있어서 團體構成員의 사기는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사기는 目標를追求하는 協同精神과 構成員의 自發的이고 持續的인 業務遂行 意慾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기가 저하된 組織은 効率的인 業務遂行과 將來의 發展을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消防法 1次改正當時 削除되었던 消防公務員 報勳制度는 消防公務員의 不斷한 努力과 次元높은 政策的 配慮가 뒷받침되어 消防公務員이 마음놓고 消防業務에 專念할 수 있도록 復活되어 2000年代에는 1次의인 欲求보다도 名譽를 위하여 自己를犠牲할 수 있는 기반이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第2節 消防奉仕行政의 發展對策

1. 消防奉仕行政의 擴大

2000年代에는 奉仕하는 消防像을 뿌리깊이 定着시키기 為하여 消防公務員의 奉仕姿勢를 確立하고 對民業務를 國民便宜 위주로改善하는 한편 모든 對民業務는肯定的인 姿勢로 檢討 處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災難 救助 및 復舊支援活動 強化 等 消防奉仕領域을 漸次 넓혀나가고,

- (1) 가뭄으로 인한 食水나 農業用水의 供給等 旱害對策 業務와
- (2) 장마기의 集中豪雨로 인한 浸水地域의 排水作業等 水難對備業務
- (3) 有毒gas漏出, 爆發事故, 瞬間事故 等 各種災難의 救難業務 및
- (4) 石油化學工業의 安全業務 等 모든 奉仕業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救急活動의 改善策

(1) 救急需要가 每年增加趨勢에 있음을 감안하여 效果的인 救急서비스를 施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診療情報確保 等을 위한 救急情報시스템體制의導入이 必要한 實情이다. 이로 인하여 醫療機關의 診療情報 募集分析, 出動하고 있는

救急隊에 病院選擇 情報提供 等 效率的인 運用을 行하는 同時에 市民들로부터의 醫療機關案內, 診療情報의 提供等 電話서비스도 행하므로써 行政機關에 대한 信賴度가 높아질 것이다.

(2) 日本의 경우 東京消防廳은 勿論이며, 대소 消防局 및 傘下 消防署에는 救急課 및 救急係가 設置되어 救急業務를 專擔하고 있는 實情이나 우리나라의 中央部署 및 特別市, 直轄市單位에도 救急課 救急係 等의 專擔部署가 없어 救急業務專擔部署를 둘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가 要望된다.

(3) 우리나라 救急隊員의 配置基準은 既存 警防要員中에서 일정한 教育을 이수한자를 指定하여 運營하고 있어 救急業務의 專門化, 效率化는 勿論 火災鎮壓業務의 圓滑한 遂行을 위하여 別途로 定員에 의한 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救急器材資材 確保基準을 策定토록 措置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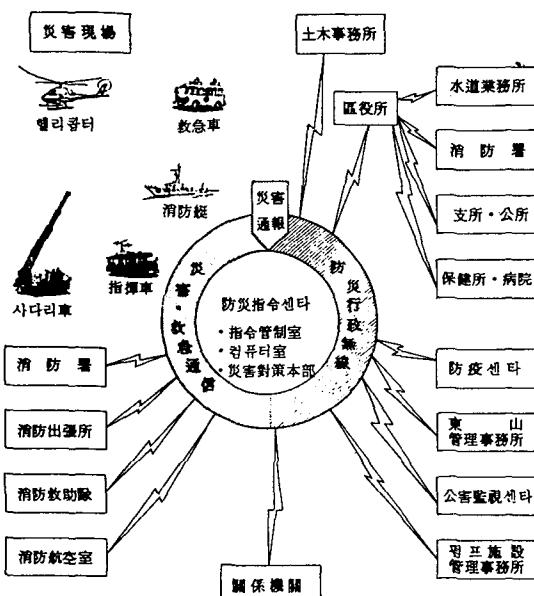
3. 消防業務의 科學化

日本과 같은 境遇에는 2年前부터 初期防火訓練, 應急救助訓練, 煙氣實驗訓練 等 1台의 車에서 30여가지 各種訓練을 體驗할 수 있는 防災訓練車의 活用과 135미터以上에서 원격조작이 可能하고 자주식 大型 방수포를 탑재한 초대형 化學車와 現場 消防活動中 給食을 提供하는 給食車를 運營하고 있다.

最近 人口, GNP, 에너지소비량, 消費對象物의 大型화 等 消防與件이 每年伸張되고 있으며 救急需要 또한 날로 增加趨勢에 있어 이에 對한 消防情報시스템의 構築이 時急한 狀況이다. 이러한 狀況으로 東京消防廳을 비롯하여 日本의 消防機關에서는 오래전부터 “防災指令 센타”를 設置하여 科學的인 火災豫防 및 鎮壓體系 確立에 기여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 消防에서도 2000年代에는 MIS(Mangement Information System) 즉, 綜合防災情報 시스템의 導入이 必要 不可缺하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消防官署中에 防災關聯情報 시스템이 設置된 官署는 아직 없으나 서울, 仁川, 京畿道의 일부 消防署와 麗水消防署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제작등 專門技術人力이 確保되지 않아 거의 活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用役

에 의해 消防對象物 關聯資料等을 入力시킬려면
많은豫算이 所要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활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電子工學, 電子計算學
科」等의 專門大, 大學等의 학생들을 消防獎學生으
로 選擇할 수 있도록 현행 “消防公務員 採用候補
者 獎學規程”을 改正하여 매년 일정 人員의 消防
獎學生을 選擇 養成하고 또한 既存 消防公務員
중에서 關聯類似分野 資格所持者나 高·大學卒業
者를 選擇 關聯 有關機關에 持續的인 委託教育을
實施하는 한편, 內務部 消防學校에 電子通信學科
等의 課程을 編成하고 關聯 實習 기자재를 確保
専門教育을 實施하여 技術人力을 確保하여 다가오는
情報化時代에 對備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別表5-7〉 日本의 防災情報通信體系圖

4. 消防救助業務 體制의 確立

우리나라 消防救助業務는 火災危險猿人の急增으로 各種 災害樣狀도 複雜 多樣해 人命事故가
빈발하여 1988.8.1 올림픽 消防對策의 일환으로
올림픽개최 도시인 全國 6個都市(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水原)에 特장차와 함께 隊員 9
名으로 人命救助隊를 創設하였으나, 日本의 境遇
1935年度부터 救助活動을 본격적으로 實施한 後
海外에서 대지진의 災害가 發生한 경우에 파견되

는 國際緊急援助隊의 설치도 推進하고 있다.

實例로 1983年 8月 22日 發生한 아프리카 카메룬 공화국의 나오스호의 有毒가스 분출재해, 同年 10月 11日 엘살바도르 공화국에서 發生한 지진재해에는 東京消防廳等에서 救助隊員이 國際緊急援助隊의 일원으로 파견되어 消防機關에서는 처음으로 海外에서 高度의 기술을 구사하여 救助活動의 業務에 從事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消防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로
日本과 比較가 되지 않으나 安全事故 多重犯罪
警護活動 等의 出動作數는 많아질 趨勢에 있어
救助活動에 必要한 裝備를 確保하고 高度의 專門
의인 救助知識과 技術의 習得으로 救助業務 體制
의 確立은 時代에 부응하는 2000年代 時代의 要求
라 할 수 있겠다.

第6章 結論

1. 2000年代의 消防環境

우리들은 흔히 未來에 對하여 큰 希望을 갖기 쉽다. 그러나 앞으로 10여년이 남은 2000年代에는 現在의 經濟成長 템포와 文化發展趨勢에 비추어 볼 때 高度產業社會와 文化가 暢達된 社會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研究課題가 2000年代의 科學의 消防力 向上 方案이므로 다분히 假定을 通한 未來學적인 檢討外에 理想的이고 未來指向의 理想型 消防發展 모델을 提示할 수 밖에 없다.

아울든 2000年代는 高度의 產業經濟社會와 文化水準의 向上으로 人口의 增加와 그에 따른 都市의 發達, 產業施設의 增加, 道路交通 및 通信·情報施設의 發達과 더불어 文化레저施設도 增加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같은 外形的인 發達과 더불어 經濟의 流通速度가 빨라지고 經濟 또한 統制 또는 計劃經濟에서 벗어나 自律經濟로 轉換되어 社會에서 民間部分의 活動領域이 擴大될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의 各部分에서 지금과 같이 지도·통제위주인 助張行政의 影響力이 縮小되고 保護的인 事務(Protective Service)인 消防業務의 機能이 強化될 것이며 住民의 安全에 對한 欲求가 增加할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을 假定해 볼 때 다음과 같은

2000年代의合理的인消防發展모델을提示할수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왔고 여러 경로를通한研究發表에서도指摘된것이지만現在의問題點을改善하기爲한漸增的인發展方向提示인 것이다.

2. 業務 및 機能의 擴大

- (1) 2000年代에는 火災의 鎮壓, 豫防 뿐만 아니라 救助 및 救難業務
- (2) 有毒ガス漏出, 爆發事故, 大型事故時 人命救助 및 現場 處理業務
- (3) 風水害, 民防衛事態時 住民保護業務 等 保護적 事務의 主導的 機能을 遂行해야 한다.

3. 消防組織의 擴大 改編

현재의行政學의理論으로는消防事務는地方自治團體의固有의事務임에틀림없다. 그러나都市의廣域化, 小邑의都市化현상, 危險物의使用量增大 및擴散, 道路交通의發達과 더불어消防事務는廣域化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英·美諸國의消防特別區制度에서도 그特徵이 잘 나타난다. 이制度는傳統의地方自治團體의行政管轄을초과한數個의地方自治團體를管轄하는特別區制度이다.

특히展示民防衛實態를假定할 때廣域消防體制의必要性은 더욱 절실해진다. 이와같은점에서長期의in消防組織 모델은

- (1) 中央消防廳을設置하여消防의主要政策決定, 消防用機械器具의品質向上, 消防力이不足한地方自治團體의支援, 民防衛事態對備業務를 수행하고消防大學 및消防研究機關을設置運營하며
 - (2) 道 및 特別(直轄)市등中間地方自治團體에消防本部를設置하여廣域消防體制를指導하고道內消防公務員의人事調整機能等을擔當케 하며
 - (3) 消防署, 職制擴大改編과
 - (4) 郡單位消防行政機關의常備화가檢討되어야 한다.
- ## 4. 消防所要財源 確保
- (1) 消防共同施設稅賦課對象을改善하여稅收를擴大하고
 - (2) 消防施設負擔金徵收檢討 및

(3) 나아가積極적으로獨立된消防財政法의制定施行도要請된다.

5. 科學的인消防行政

2000年代에는모든災害에efficiency의으로대처하기위해MIS等의導入으로災害情報處理시스템의活用과新型裝備開發等이要請된다.

6. 消防公務員의士氣昂揚

職務遂行中死傷한消防公務員에對한報勳制度의確立과危險職務遂行에따른報酬體系도再整備되어야 한다.

위에서살펴본事項은현재우리消防이안고있는問題點에對한漸增的改善策이며보다efficiency의消防業務推進을위한合理model의提示한다. 우리가함께일하고, 우리생의精誠을마침消防의發展과2000年代의名譽로운消防奉仕活動을위하여지금우리消防인이處해있는狀況이나하나하나漸進的發展을追求함으로써밝은2000年代에對備해야할것이다.

参考文獻

1. 内務部,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서울: 正和印刷文化社, 1988.
2. 内務部, 「消防公務員海外研修結果報告書」, 内務部, 1987.
3. 内務部, 「消防力基準에關한規則」, 内務部, 1988.
4. 内務部, 「消防訓令例規集」, 内務部.
5. 内務部, 「鎮壓消防力現況」, 内務部, 1988.
6. 「'88消防行政統計」, 麗水消防署, 1988.
7. 李保相, 「消防關係法令集」, 서울: 크라운출판사, 1986.
8. 崔成龍, 「最近消防法規解說集」, 서울: 雪出版社, 1986.
9. 「消防公務員行政形態에關한調查研究」, 최종태(消防正), 碩士學位論文, 1985.
10. 「韓國消防行政의發展方案에關한研究」, 김광수(서울消防本部), 碩士學位論文, 1988.
11. 「自治消防」, 서울: 大韓消防公論社, 1987, 1988.
12. 崔令成, 「韓國消防總覽」, 서울: 安全出版社, 1971.
13. 김규정, 「行政學原論」, 서울: 法文社, 1988.
14. 趙誠逸, 「消防戰術」, 서울: 大韓消防公論社, 1983.

2000年代 科學消防行政 消防技術 및 現實의 消防力 向上方案

15. 内務部, 「韓國消防行政史」, 서울: 正和印刷文化社, 1978.
16. 이상규, 「新 行政法論」, 서울: 法文社, 1988.
17. 内務部, 消防學校, 「第1,2,3回 全國 研鑽大會 優秀研究論文集」, 午원: 信文社, 1984, 1986, 1987.
18. 麗水市, 「麗水市 自治法規」, 麗水市.
19. 内務部, 「消防公務員 人事法令集」, 内務部.
20. 孫在植, 「現代地方行政論」, 博英社, 1984.
21. 金亨培, 「地方自治論」, 啓明社, 1988.